

##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<b>467</b>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「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」에서 운영중인 「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」 운영권의 우리 도 이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가.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(제1조)
- 나.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은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·지원 및 활성화 사업,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 및 경영기술 지도,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등으로 함(제3조)
- 다.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- 라. 센터에 대한 도의 운영비 보조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 할 수 있도록 함(제9조, 제10조)
- 마.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)

의안전문 : 따로붙임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센터의 위치는 청주시에 두며,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·지원 및 활성화 사업
2.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
3.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
4. 센터 지원시설 및 공용개발 장비 관리 운영
5.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위탁운영등)**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충청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
2. 충북지역 기술혁신과 첨단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
3. 국·공립 연구기관

②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·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관리자"라 한다)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센터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
  2.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
  3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4.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
- ②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제6조(수탁관리자의 의무) ①수탁관리자는 센터의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·수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탁재산의 관리) ①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  2.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
  3.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
-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인력) 수탁관리자는 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비보조) ①수탁관리자가 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 
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감독) ①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지도·감독의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

**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)**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 (진흥시설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**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)**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**제30조의4(파견근무)**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기관·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·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